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46
----------	-------

발의연월일 : 2023. 12. 5.

발 의 자 : 박상혁 · 홍성국 · 박 정
민형배 · 허 영 · 어기구
한준호 · 김병욱 · 김정호
김민기 · 최인호 · 장철민
허종식 · 홍기원 · 김남국
임종성 · 김운덕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u>2023년 12월 31일</u>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u>100분의 10</u>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u>100분의 15</u> 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 -----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u>100분의 20</u> ----- ----- ----- <u>100분의 25</u> ----- ----- ----- ----- ----- ----- ----- ----- ----- -----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